

[별지 제18호의2서식] <개정 2015.8.13.>

현수막 등 표지 재교부신청서

1. 분실하거나 못쓰게 된 표지 번호:
2. 분실일시:
3. 분실장소:
4. 분실사유:

위와 같이 (「공직선거법」 제67조에 따른 현수막)·(「공직선거법」 제79조에 따른 공개장소 연설·대담용 자동차·확성장치·녹음기·녹화기)·(「공직선거법」 제91조에 따른 선거벽보 등 부착 자동차·선박)의 표지를 (잃어버려)·(못쓰게 되어) 재교부를 신청합니다.

	년	월	일	
신청인				○○당 ①인
				대표자 ○○○ ①인
				후보자 ○○○ ①인
				(선거사무장)·(선거연락소장)○○○ ①인

○○선거관리위원회 귀중

주: 1. 분실장소와 분실사유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적어야 합니다.
2. 표지를 못쓰게 되어 재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2.~4.는 적지 않습니다.